

특허청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심판사무취급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구술심리개최 시 일반 국민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근거 및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함

※특허법 제154조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.

◇ 주요내용

- 가.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 호의 지칭을 ‘심판청구’에서 ‘사건’으로 문구 변경(제31조제1항 개정)
- 나.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,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방청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제39조의2제4항 신설)
- 다. 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사안을 검토하여 일반인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(제39조의2제5항 신설)
- 라. 구술심리보류통지서의 심판번호와 사건의 표시를 당사자 상단에 표시하도록 변경(별지 12-5 개정)